

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482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1999년 5월 18일

제안자 : 총무보사위원회

위원장 황 의 형

1. 제안이유

동 조례안의 경우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동 지역과 읍·면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을 두고 있으나 이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어 주민세를 조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동 지역의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4,000원에서 3,000원으로 함.
(안 제22조)

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2조제1항제1호 가목중 “동 : 4,000원”을 “동 : 3,000원”으로
한다.

수 정 안 대 비 표

원 안	수 정 안	수 정 안	비 고
제22조(세율) ① 균등 할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2조(세율) ①	제22조(세율) ①	
1. 개인	1. 개인의 세율	1.	
가.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	가. 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 인의 세율	가.	
<u>동 : 1,800원</u>	<u>동 : 4,000원</u>	<u>동 : 3,000원</u>	
<u>읍·면 : 1,000원</u>	<u>읍·면 : 3,000원</u>		
나.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: 50,000원	나. 시내에 사업장 을 둔 개인의 표 준세율 : 50,000원	나.	
2. 법인	2. 법인의 표준세율	2.	
(생 략)	(원안과 같음)	(원안과 같음)	